

통계법 (제33조 비밀의 보호)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.	※ ID	※ LISTID	※ NO

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

안녕하십니까?
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.
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「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조사는 제조업 분야의 여성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여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.

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에 관한 통계마련과 법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에만 이용될 것이며, 설문 대상자의 답변은 익명으로 분석·처리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.
 가능한 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2016년 9월

국가인권위원회 ·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

연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 관: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: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문의: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☎ 02)3277-2764
조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사기관: (주)아이알씨 (우)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-1 극동VIP빌딩 4층 담당자: 임용옥 차장

※ 응답자 기본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(연락처 등은 응답 내용 확인을 위한 연락 시 필요한 사항이며,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)

성명		연락처	
기관명		응답자 직책	

설문 응답 방법

- 해당되는 번호를 적거나 빈칸에 √를 표시하시고, 괄호 안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써주십시오.
 -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

※ 이 설문에서 지칭하는 “이주여성노동자” 는 아래 체류유형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.

① E-9-1 (제조업)	⑤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 (결혼이민)
② E-9-2~4 (농축산업, 건설업, 어업, 서비스업)	⑥ H-2 (방문취업)
③ F-1, F-3 (방문동거, 동반)	⑦ 미등록 (불법체류)
④ F-4 (재외동포)	⑧ 기타의 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노동자

Section A 기본 인적 사항

1. 다음 칸에 해당하는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출생년도	() 년	근무경력	() 년	성별	① 남자 ② 여자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2. 귀하의 기관은 어떤 성격입니까? ()

- ① 정부위탁기관(외국인력지원센터,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)
- ② 비영리 민간단체(NGO)
- ③ 종교기관(가톨릭, 교회, 불교 등)
- ④ 이주민공동체
- ⑥ 노동조합
- ⑦ 기타 ()

3. 귀하의 기관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연간 전체 상담의 몇 %를 차지합니까?
 약 _____ %

4.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는 어떤 문제로 귀하 혹은 귀하의 기관을 방문합니까?
가장 빈번한 순서대로 기재해 주세요. (1순위: , 2순위: , 3순위:)

- ① 임금(임금, 퇴직금, 가산수당)체불
- ② 의료상담(병원연계, 의료통역 등)
- ③ 산재상담
- ④ 사업장변경
- ⑤ 체류상담(본인의 체류연장, 귀화, 친정가족 초청 등)
- ⑥ 모성권 관련(출산전후휴가, 임신·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등)
- ⑦ 기타 ()

Section B **근로조건**

5.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.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.

항 목	매우 그렇다	그렇다	그렇지 않다	전혀 그렇지 않다	응답란
1) 근로계약서는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, 서면으로 작성·교부되고 있다.	①	②	③	④	
2) 제조업 분야의 근로조건은 다른 분야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.	①	②	③	④	
3)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.	①	②	③	④	
4)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고 있다.	①	②	③	④	
5) 야간근로(22시-06시)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는다.	①	②	③	④	
6)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는다.	①	②	③	④	
7)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 이상 보장된다.	①	②	③	④	
8) 임금(퇴직금 포함)체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.	①	②	③	④	
9) 생활환경이 양호한 숙소가 제공된다.	①	②	③	④	
10) 식사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안다.	①	②	③	④	
11) 한국인 근로자들과 대체로 사이좋게 지낸다.	①	②	③	④	
12) 사용자와 관리자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된다.	①	②	③	④	

6.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.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.

항 목	매우 그렇다	그렇다	그렇지 않다	전혀 그렇지 않다	응답란
1)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있는 경우,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.	①	②	③	④	
2)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.	①	②	③	④	
3)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.	①	②	③	④	

7.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파생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우선순위로 3가지만 순서대로 기재해 주세요. (1순위: , 2순위: , 3순위:)
- ① 실업급여(구직급여)대상이 되지 못한다.
 - ② 출산전후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.
 - ③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.
 - ④ 기타()

Section C **산업안전 및 의료**

8. 귀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,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3가지를 기재해 주세요. (1순위: , 2순위: , 3순위:)
- 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서
 - ② 신청절차나 방법을 몰라서
 - ③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서
 - ④ 회사(사업주)가 원하지 않아서
 - ⑤ 생계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
 - ⑥ 회사에 찍히거나 불이익 대우를 받을까봐
 - ⑦ 기타 ()

9.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?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3가지를 기재해 주세요. (1순위: , 2순위: , 3순위:)
- ① 필요한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
 - ②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에 안전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
 - ③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
 - ④ 작업에 사용되는 약품이나 기타 화학물질의 유독성으로 인해
 - ⑤ 신체에 무리가 가는 같은 동작이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
 - ⑥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해야 해서
 - ⑦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
 - ⑧ 기타 ()

10.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,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 (복수응답 가능) (, , , , ,)
- ①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(의료)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
 - ② 병원비 부담이 걱정돼서
 - ③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
 - ④ 사용자가 보내주지 않아서
 - ⑤ 병원에 가도 한국어로 말하기 힘들어서
 - ⑥ 기타 ()

Section D **성차별, 모성보호 및 인권실태**

11. 당신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?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심각성 정도를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.

항 목	성차별 심각성 정도				응답란
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그렇다	매우 그렇다	
1)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적게 받는다.	①	②	③	④	
2) 사업주가 임금, 휴가, 상여금 등에 한국인 여성근로자 보다 차별 대우를 한다.	①	②	③	④	
3)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다.	①	②	③	④	
4) 여성은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로 잔업·특근을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한다.	①	②	③	④	
5) 사업주는 채용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한다.	①	②	③	④	
6) 여성은 남성보다 퇴직·해고에서 차별받는다.	①	②	③	④	

12.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법정일수(90일) 이상 사용하지 못했다면,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 ()
- ①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아니어서
 - ② 사용자가 최초 60일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
 - ③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 출산전후휴가를 다 사용할 수 없어서
 - ④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서
 - ⑤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해고될까봐 두려워서
 - ⑥ 법 제도를 몰라서
 - ⑦ 기타()

13.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심각성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응답란에 기재해 주세요. ()
-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

14.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Section E 성희롱 및 성폭행

15.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?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심각성 정도를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.

항 목	성희롱 및 성폭행의 심각성 정도				응답란
	전혀 심각하지 않다	심각하지 않다	심각하다	매우 심각하다	
1) 성적 언동을 동반한 성희롱 행위	①	②	③	④	
2)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	①	②	③	④	
3) 돈을 주겠다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행위	①	②	③	④	
4) 성폭행(강간) 행위	①	②	③	④	

16.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희롱이나 성폭행에 관한 상담이나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합니까? 우선순위로 3가지만 기재해 주세요.(복수 응답가능)

(1순위: , 2순위: , 3순위:)

- ① 피해자에게 그냥 참으라고 조언한다 ②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도록 한다
- ③ 가해자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한다 ④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한다
- ⑤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한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
- ⑦ 기타 ()

Section F 사업장 변경과 후속조치

17.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과 관련한 인권 침해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? ()

-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

